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6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용우·박민규·민병덕
김 윤·이주희·박지혜
박정현·임미애·백승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5.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청년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8.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제22조제3항 후단 중 “아동”을 “제15조제4항을 준용하여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한다</u> .	④ ----- ----- <u>하며, 각</u> <u>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u> <u>포함되어야 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u> <u>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u> <u>3명 이상</u>
<u><신 설></u>	4. <u>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u> <u>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u> <u>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u> <u>는 자 3명 이상</u>
<u><신 설></u>	5. <u>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u> <u>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u> <u>는 자 2명 이상</u>
<u><신 설></u>	6. <u>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u> <u>로서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u> <u>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u><신 설></u>	7. <u>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u> <u>청년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u>이상</u>

<u><신 설></u> <u><신 설></u> ⑤ ~ ⑨ (생 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아동</u>,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8.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5조제4항을 준용하여 <u>아동</u>----- ----- ----- -----. ④ (현행과 같음)
---	--